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 호 1978 제출연월일: 2024. 7. 19.

제 출 자:정 부

제안이유

벤처기업 등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모험자본을 보다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 중 100분의 40을 초과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설정·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,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설정·설립 요건 및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가.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설정·설립 등(안 제9조제30항·제31항, 제 229조제6호 및 제229조의2 신설)

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 중 100분의 40 이상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로 설정·설립할수 있도록 하고,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는 존속기간이 최소 5년 이상인

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설정·설립하도록 하는 등 기업성장집합 투자기구의 설정·설립 요건 등을 정함.

나.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의 인가 요건(안 제12조제2항제6호)

기업성장집합투자업을 인가받으려는 자는 기본적으로 금융투자업의 인가 요건을 갖추도록 하되, 대주주 등이 갖추어야 할 요건에 대해서 는 금융투자업자의 변경인가 시 적용되는 완화된 요건을 적용하도록 하여 벤처캐피탈 등 벤처투자에 전문성이 있는 자가 기업성장집합투 자업에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함.

- 다.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의 자산운용 제한(안 제81조제1항, 안 제81조 제5항 신설)
 - 1)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는 비상장기업 등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고 있어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와는 다른 자산운용의 제한이 필요함.
 - 2)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가 벤처기업 등 주투자대상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자산운용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되, 주투자 대상기업에 대하여 법정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투자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등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의 자산운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함.
- 라.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의 금전차입 등(안 제83조제1항제1호의2,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 신설)
 - 1)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금전을

차입하거나 금전을 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, 벤처기업 등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위하여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의 경우 금전 차입이나 금전대여를 허용할 필요가 있음.

- 2)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가 벤처기업 등 주투자대상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도록 하고, 주투자대상기업에 금전을 대여할 수 있도록 함.
- 마. 자산운용의 제한규정 위반에 따른 벌칙의 적용(안 제444조제9호의2 신설)

벤처기업 등 주투자대상기업에 대하여 법정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투자하는 행위 등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의 자산운용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.

법률 제 호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9조에 제30항 및 제3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이 법에서 "기업성장집합투자업"이란 집합투자업 중 제229조제6호에 따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통한 집합투자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.
- ③ 이 법에서 "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"란 집합투자업자 중 기업성장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.

제12조제2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"요건"을 "요건(기업성장집합투자업의 경우에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완화된 요건으로 한다)"으로 한다.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"를 "운용(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가 제229조제6호에 따른 주투자대상기업에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할 때 다음각 호의 행위"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"해할"을 "해칠"로, "이를"을 "각 호의 행위를"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"부동산집합투자기구"를 "부동산집합투자기구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"를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는 제229조제6호에 따른 기업성장집합투자 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- 1. 제229조제6호에 따른 주투자대상기업(이하 제2호, 제3호 및 제5호 에서 "주투자대상기업"이라 한다)에 대하여 같은 호에 따른 금액 이하의 집합투자재산을 투자하는 행위
- 2. 각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20 이하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집합투자재산을 동 일한 주투자대상기업에 투자하는 행위
- 3. 주투자대상기업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지분증권 수(동일한 기업성장 집합투자업자가 설정・설립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동일한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가 설정・설립한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가 설정・설립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지분증권 수를 모두 더한 지분증권 수를 말한다)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
- 4. 다음 각 목의 금융투자상품에 각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의 집합투자재산을 투자하는 행위

가. 국채증권

나. 「한국은행법」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다.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

- 라. 그 밖에 금융투자업자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투자성이 낮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
- 5. 주투자대상기업에 투자한 재산 외의 집합투자재산을 제229조제2호 에 따른 부동산에 투자하는 행위
-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가 가격 변동 등 대통령 링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까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아니 한다.

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운용함에 있어서"를 "운용할 때"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1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의2.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가 제229조제6호에 따른 주투자대상기업 에 투자하는 경우

제83조제2항 중 "가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"을 "가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해서는"으로 하고, 같은 항에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제1항제1호 ·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차입: 100분의 10
- 2. 제1항제1호의2에 따른 차입: 100분의 100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

제8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④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 집합투자재산 중 금전을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금전을 대여할수 있다.
- 1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30일 이내의 단기대출을 하는 경우
- 2. 제229조제6호에 따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가 같은 호에 따른 주투 자대상기업에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

제183조제1항 중 "혼합자산 및 단기금융"을 "혼합자산·단기금융 및 기업성장"으로 한다.

제229조제1호 중 "증권집합투자기구 : 집합투자재산"을 "증권집합투자기구: 집합투자재산"으로, "제2호 및 제3호"를 "제2호·제3호 및 제6호"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"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 :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의"를 "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: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"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: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 중 100분의 40 이 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집 합투자재산을 성장 가능성이 높은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벤처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조합 등(이하 "주투자대상기업"이라 한다)에 금전의 대여, 증권의 매입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

제5편제3장제1절에 제2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229조의2(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) 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설정· 설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. 다만, 전 문투자자의 투자금만으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설정·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설정·설립일부터 3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간까지 제4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 - 1.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로 설정ㆍ설립할 것
 - 2.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설정 · 설립할 것
 - 3. 존속기간은 5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할 것
 - 4. 모집가액은 5백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
 - ②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는 자기가 설정·설립한 각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총수(추가설정 또는 신규발행된 증권 수를 포함한다)의 100분의 10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증권 수 이상의 집합투자증권을 3년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한다.
 -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설정·설립·해지·해산, 주투자대상기업에 대한 투자비율의 산정, 집합투자증권의 발행·상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30조제3항 중 "90일"을 "90일(전문투자자의 투자금만으로 기업성장 집합투자기구를 설정·설립하는 경우에는 3년)"로 한다. 제444조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의2. 제81조제5항을 위반하여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

별표 1 제90호 중 "제81조제1항"을 "제81조제1항·제5항"으로 하고, 같은 표에 제22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24의2.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에 관하여 제229조의2를 위반한 경우 별표 2 제2호 중 "제81조제1항"을 "제81조제1항·제5항"으로 하고, 같은 표에 제4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7의2.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에 관하여 제229조의2를 위반한 경우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그 밖의 용어의 정의) ① ~	제9조(그 밖의 용어의 정의) ① ~
29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∞ 이 법에서 "기업성장집합투
	자업"이란 집합투자업 중 제229
	조제6호에 따른 기업성장집합
	투자기구를 통한 집합투자를 영
	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.
<u><신 설></u>	③ 이 법에서 "기업성장집합투
	자업자"란 집합투자업자 중 기업
	성장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자
	<u>를 말한다.</u>
제12조(금융투자업의 인가) ①	제12조(금융투자업의 인가) ①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인	2
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	
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.	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6. 대주주나 외국 금융투자업자	6
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	
<u>요건</u> 을 갖출 것	요건(기업성장집합투자업의
	경우에는 제16조제2항에 따른
	완화된 요건으로 한다)
가.·나. (생 략)	가.・나. (현행과 같음)

6의2. • 7. (생략)

③ (생략)

제81조(자산운용의 제한) ① 집합 저 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 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투자자보호 및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적운용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.

- 1. ~ 4. (생략)
- ②・③ (생략)
- ④ 제1항제1호가목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와 제3호가목·나목, 제229조 각 호에 따른 투자비율은 집합투자기구의 최초 설정일 또는 설립일부터 6개월(제229조 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경우 1년)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
<신 설>

6의2.・7. (연행과 샅음)			
③ (현행과 같음)			
제81조(자산운용의 제한) ①			
<u>한</u>			
용(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가 제			
229조제6호에 따른 주투자대상			
기업에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			
다)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			
<u>해칠</u>			
<u>각 호의 행위를</u>			
1. ~ 4. (현행과 같음)			
②·③ (현행과 같음)			
4			
<u>부동산집합투자</u>			
기구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			
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			
⑤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는 제			
229조제6호에 따른 기업성장집			
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			

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- 1. 제229조제6호에 따른 주투자 대상기업(이하 제2호, 제3호 및 제5호에서 "주투자대상기업"이라 한다)에 대하여 같은 호에 따른 금액 이하의 집합투자재산을 투자하는 행위
- 2. 각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자 산총액의 100분의 20 이하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집합투자재산을 동일한 주투 자대상기업에 투자하는 행위
- 3. 주투자대상기업이 발행한 지 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50 이 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비율에 해당하는 지분증권 수(동일한 기업성장집합투자 업자가 설정・설립한 기업성 장집합투자기구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동일한 기업성장집 합투자업자가 설정・설립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가 투자 한 지분증권 수를 모두 더한 지분증권 수를 말한다)를 초

과하여 투자하는 행위

4. 다음 각 목의 금융투자상품 에 각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의 집합투자재산을 투자하는 행위

가. 국채증권

- 나. 「한국은행법」 제69조에

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

 권
- 다.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

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

 채권
- 라. 그 밖에 금융투자업자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지 아 나하고 투자성이 낮은 것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
- 5. 주투자대상기업에 투자한 재 산 외의 집합투자재산을 제229 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에 투 자하는 행위
-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기업성 장집합투자업자가 가격 변동 등

<신 설>

제83조(금전차입 등의 제한) ① 저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(借入)하지 못한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.

<u>1</u>. (생 략)

2. (생략)

<신 설>

- 3. (생략)
- ②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경우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당시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에
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
사유로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
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게 된
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대
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같
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
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아
<u>니한다.</u>
세83조(금전차입 등의 제한) ①
<u>운용할 때</u>
 2. (현행 제1호와 같음)
2. (연행 제1오와 짙음) 1. (현행 제2호와 같음)
1. (원왕 제2오퍼 된 B) 1의2.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가
제229조제6호에 따른 주투자
대상기업에 투자하는 경우
3. (현행과 같음)
②
_

서 부채총액을 뺀 <u>가액의 100분</u> 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 다.

<신 설>

<신 설>

③ (생략)

④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 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집합투자 재산 중 금전을 대여(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30 일 이내의 단기대출을 제외한 다)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⑤ (생략)

제183조(집합투자기구의 명칭) ① 집합투자기구는 그 상호 또는 명칭 중에 제229조 각 호의 집

------ <u>가액에 다음</u> <u>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</u> <u>한 금액을 초과해서는</u> -----

- 1. 제1항제1호·제2호 및 제3호 에 따른 차입: 100분의 10
- 2. 제1항제1호의2에 따른 차입:100분의 100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
- ③ (현행과 같음)
- ④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 산을 운용할 때 집합투자재산 중 금전을 대여해서는 아니 된 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는 금전을 대여할 수 있다.
 - 1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 관에 30일 이내의 단기대출을 하는 경우
 - 2. 제229조제6호에 따른 기업성 장집합투자기구가 같은 호에 따른 주투자대상기업에 금전 을 대여하는 경우
 - ⑤ (현행과 같음)

제183조(집합투자기구의 명칭) ①

합투자기구의 종류를 표시하는 문자(증권·부동산·특별자산 ·<u>혼합자산 및 단기금융</u>을 말한 다)를 사용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- 제229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)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
 - 2. · 3. (생략)
 - 4.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 :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집

<u>혼합자산·단기금융 및 기업</u>
<u>성장</u>
② (현행과 같음)
]229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)
1. <u>증권집합투자기구: 집합투자</u>
<u>재산</u>
<u>제2호 • 제3호</u>
및 제6호
2. · 3. (현행과 같음)
4.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: 집합
투자재산을 운용할 때 제1호
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에
따른

합투자기구 5. (생 략) <<u>신</u> 설>

<신 설>

5. (현행과 같음)

6.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: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 중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급액을 초과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성장 가능성이 높은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벤처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조합 등(이하 "주투자대상기업"이라 한다)에 금전의 대여,증권의 매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

제229조의2(기업성장집합투자기 구) 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설정・설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. 다만, 전문투자자의 투자 금만으로 기업성장집합투자기 구를 설정・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설정・설립일부터 3년 이하 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간까지 제4호의 요건을 갖

추어야 한다.

- 1.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로 설정·설립할 것
- 2.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

 집합투자기구로 설정・설립할

 <u>것</u>
- 3. 존속기간은 5년 이상으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할 것
- 4. 모집가액은 5백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금액 이상일 것
- ②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는 자기가 설정・설립한 각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총수(추가설정 또는 신규발행된증권 수를 포함한다)의 100분의 10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증권 수 이상의 집합투자증권을 3년 이상의 집합투자증권을 3년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한다.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사항 외에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설정・설립・해지・해산,주투자대상기업에 대한 투자비

- 제230조(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 저구) ①·② (생략)
 - ③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는 신탁계약 또는 정관에 투자자의 환금성 보장 등을 위한 별도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최초로 발행한 날부터 90일이내에 그 집합투자증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하여야 한다.

④・⑤ (생략)

- 제444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저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- 1. ~ 9. (생 략) <신 설>

율의 산정, 집합투자증권의 발
행・상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
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제230조(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
구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
<u>90일</u>
(전문투자자의 투자금만으로 기
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설정ㆍ
설립하는 경우에는 3년)
④·⑤ (현행과 같음)
제444조(벌칙)
1. ~ 9. (현행과 같음)
9의2. 제81조제5항을 위반하여
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집합
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
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

	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
10. ~ 29. (생 략)	10. ~ 29. (현행과 같음)